

##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35조(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공과대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함)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2014. 11. 24, 2017. 6. 7)

② 이 규정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인증 및 적용 대상, 이수 및 졸업, 전입생 수용, 기타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0.30, 2009.12.8)

**제2조 (기본이념)** 공학교육인증제라 함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임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하여 재학생의 학습성도가 향상되고,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지속적으로 만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순환 개선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의 도모를 본 규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 2 장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제3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각 학과(전공)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하는 '심화프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별 명칭과 학위 명칭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조와 같다. (개정 2009.12.8)

② '심화프로그램'의 운영은 학칙과 본 규정을 근간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제정된 심화프로그램 운영 내규에 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12.8)

③ '일반프로그램'은 본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9.12.8)

④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전공)는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심화프로그램 책임자(Program Director, 이하 'PD')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신설 2009.12.8)

**제4조** (삭제 2006.9.1 - 시행규칙 제2조로 이동)

### 제 3 장 인증 및 적용 대상

**제5조 (인증 대상)**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을 공학교육인증 적용 대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09.12.8)

②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공학교육인증은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심화프로그램의 졸업대상자 선정은 공학교육인증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22)

**제6조** (삭제 2006.9.1 - 시행규칙 제3조로 이동)

### 제 4 장 인증 요건

**제7조 (학점 이수 및 졸업 요건)** ① 심화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학칙과 프로그램 운영내규에서 정

한 졸업학점을 프로그램 교과이수체계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② 심화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졸업을 위하여 제1항 외에 프로그램 운영내규에서 정한 별도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6.1.19)

③ 심화프로그램 별 졸업요건 및 졸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본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09.12.8, 개정 2016.1.19)

## 제 5 장 심사 시기 및 이수포기

**제8조 (심사 시기 및 이수포기)**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의 학생은 학칙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전원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나, 시행규칙 3조에서 명시한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1.11.1., 2016.1.19., 2018. 9. 4)

② 이수포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 제 6 장 전입생 수용

**제9조 (전입생)** ① 전입생이라 함은 심화프로그램에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전과생 등을 의미한다. (개정 2007.10.30, 2009.12.8)

② 프로그램에 전입한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전입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3장에 따른다.

## 제 7 장 공학교육혁신센터

**제10조 (공학교육혁신센터)** (신설 2006.9.1) ① 공학교육인증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관장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기구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개정 2007.10.30, 2009.12.8)

②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 ①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단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내 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0.12.22)

② 각 프로그램에서는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삭제 2006.9.1 - 시행규칙 제 4장으로 이동)

④ 각 위원회의 세부 운영 사항은 시행규칙 제 4장을 따른다.

## 제 8 장 기 타

**제12조 (기타)** ① 본교의 학칙 및 시행규칙과 공학인증제 운영규정이 상충할 경우에는 대학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9.12.8)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9.12.8)

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과대학 2006.3.1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 및 2007.3.1 이후 편입하는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심화프로그램 이수포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9.)**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8조의 1항의 규정은 2016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6. 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시행규칙

### 제 1 장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본 대학교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이하 ‘운영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제 2 장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조 (프로그램 명칭 및 이수표기)**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각 학과(전공) 및 트랙의 심화 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의 명칭은 학칙시행규칙 제144조의 1의 학사학위종류에 근거하여 <별첨 1>과 같다. (개정 2009.12.8, 2010.12.22., 2011.11.1., 2016. 1. 19, 2017. 6. 7, 2018. 9. 4)

②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 이수자의 학위명은 학칙 제35조와 제56조에 근거하여 <별첨 1>과 같이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구별하여 표기한다. 졸업증명서 표기 양식은 <별첨 2>~<별첨 5>와 같다. (개정 2009.12.8)

③ 졸업예정증명서와 재학증명서에도 ②항과 같이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졸업예정증명서 표기 양식은 <별첨 6>~<별첨 9>와 같다. (개정 2009.12.8)

**제3조 (심화프로그램의 적용)** ①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광역학부 트랙 이수 예정자 전원은 학칙 제24조에 근거하여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광역학부 중 모집단위 전체가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의 신입생은 이수 예정 트랙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6.1.19., 2017. 6. 7, 2017. 6. 20, 2018. 9. 4)

②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광역학부로 편입학, 전과한 학생도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화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7. 6. 7)

③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및 광역학부로 공학교육인증제 시작년도 이전 입학생이 심화프로그램 운영 후 복학, 재입학한 경우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화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6.1.19., 2017. 6. 7)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심화프로그램 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6.1.19., 개정2017. 6. 7, 2018. 9. 4)

1. 선취업후진학, 외국대학 학적 유학생 등 학과(전공)의 전일제(주간) 신입학생이 아닌 입학생
2. 외국국적 신입학생
3. 편입학생, 전과(부)생, 전입복학생, 재입학생 등의 전입학생
4.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광역학부 3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으로서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하여 전입한 학생. 단 컴퓨터정보공학부는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함.
5. 복수·연계전공 이수학생
6. 학석사연계과정, 공동학위취득제도 이수 학생
7. <삭제 2018. 9. 4>
8. <삭제 2018. 9. 4>
9. ‘1’~‘6’호 해당학생은 과정 시작 학기 내 인증예외인정 여부를 프로그램에 확인해야 하며, 졸업 1년 전까지 심화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4조 (인증요건)** ① 심화프로그램을 졸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점이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8)

1.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0.12.22)
2. 각 심화프로그램 교과과정표에서 정한 인증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3. 엔지니어 기본소양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양교과목을 각 심화프로그램 교과과정표에서 정한 이수기준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8, 개정 2010.12.22., 2011.11.1., 전부 개정 2014. 11. 24)
4. 각 심화프로그램 교과과정표에서 정한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MSC)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을 따르는 심화프로그램의 경우 수학과 기초 과학을 포함하여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8, 개정 2010.12.22., 2011.11.1., 2014. 11. 24)
5. 각 심화프로그램 교과과정표에서 정한 54학점 이상의 전공분야의 공학주제교과목을 이수체계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을 따르는 심화프로그램의 경우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공학주제교과목은 각 전공분야인증기준에서 제시한설계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8., 개정 2011.11.1., 2014. 11. 24)
6. 호서대학교 교육과정표에 근거하여 교수면담지도와 채플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8)
7. 호서대학교 학칙 제55조에 근거하여 졸업논문 혹은 학과(전공)에서 정한 이와 동등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전공-단과대학의 이수지침을 반영하여 각 프로그램이 지정한 전공졸업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09.12.8, 개정 2010.12.22., 2011.11.1., 2014. 11. 24)
- ② 심화프로그램 졸업을 위해서는 1항의 학점이수 외 각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에서 정한 졸업예정자 학습성과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4. 11. 24)
- ③ 1항과 2항에서 정하지 않은 각 심화프로그램별 졸업요건은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9.12.8)
- ④ (삭제 2009.12.8)
- ⑤ 교환학생, 학점교류과정, 현장실습(인턴십), 예비대학 등의 이수학점 인정은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의 학점인정 심사 기준을 따른다.(신설 2016.1.19)

**제5조 (이수 포기)** ①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수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8. 9. 4)

② 이수 포기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각 심화프로그램에서 정한 프로그램 운영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9.12.8)

**제6조 (졸업대상자 선정)** ① 단과대학은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달성한 자를 예비 심사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통보한다. (개정 2009.12.8, 2010.12.22)

② 심화프로그램 소속 학생이 제4조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학원 졸업사정위원회 심사에 탈락하였을 경우 졸업이 불가하다. (개정 2009.12.8)

### 제 3 장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전입생 수용 지침

**제7조 (전입생의 이수신청)** 편입 및 전공 변경, 복학, 재입학을 통하여 심화프로그램으로의 중도진입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내규에 명시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8조 (전입생의 수용절차)** 제7조에 따라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신청한 전입생을 위해 각 심화

프로그램에서는 전입생의 수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의 세부 사항은 각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에서 정한다. (개정 2009.12.8)

**제9조 (전입생의 학점인정절차 및 수용정책)** ① 전입생 중 편입생 및 전공 변경 학생의 전적 대학(학부/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학습성과 성취도의 인정여부는 각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9.12.8)

② 전입생 중 심화프로그램의 인증제 운영 시작 이전 학번 복학생과 재입학생의 이수 학점 및 학습성과 성취도에 대한 인정 여부는 각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9.12.8, 2010.12.22)

③ 전입생의 이수 학점 및 학습성과 성취도 인정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9.12.8)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해당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를 따른다. (개정 2009.12.8)

## 제 4 장 위 원 회

**제11조 (PD위원회)** ① 각 심화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PD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09.12.8)

② 위원회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위원장), 심화프로그램 별 PD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9.12.8)

③ 자문위원으로는 공과대학 학장, 부학장,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본 규정 2~4호에 해당하는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제·개정 및 폐지안 심의 (개정 2009.12.8)
2. 공학교육인증관련 학사관리 및 제도 개선 사항 검토 및 심의
3. (삭제 2009.12.8)
4. 공학교육인증제 관련 전반적인 사항 운영 및 관리 (개정 2009.12.8)

**제12조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 CQI위원회)** ① 공과대학에서는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의 지속적 품질개선을 위해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 CQI위원회(이하 ‘CQI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07.10.30)

②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각 교과에 대표교강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대표교강사는 교과목의 지속적 품질개선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③ CQI 위원회는 검토위원으로 공과대학 교학팀장, 교무팀장, 학사팀장, 기획팀장,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으로는 공과대학장, 교무처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8)

④ CQI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 학과의 교과 개선 요구사항 및 대표교강사의 개선요구사항 점검
  - 학과 의견서, 대표교강사 CQI 보고서 검토
2. 개선사항 도출 및 실행 건의(대학본부, 학과, 혁신센터, 교수)
3. <삭제 2016.1.19>

**제13조 (프로그램위원회)** ① 각 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 ①항의 각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2. 전입생 인증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30>
- 3. 인증포기에 관한 사항
- 4.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프로그램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6.1.19>

### 제 5 장 프로그램별 운영 세부지침

제15조 (운영 세부 지침) 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 학부(전공)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별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본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제4조에 해당하는 사안의 제·개정 시 PD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8, 2010.12.22)

②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를 따른다. (개정 2009.12.8)

#### 부 칙

① 본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본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본 시행세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증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1항의 규정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19.)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 1항, 4항의 규정은 2016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6. 7.)**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6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 학생의 프로그램 명칭 및 학위 명칭은 변경 전 별첨 1의 표에 따른다.

**부 칙(2017. 6. 20.)**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4.)**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공학교육교육인증 프로그램 명칭 및 학위명칭>(개정 2017. 6. 7)

단과대학	학부	전공/트랙명	심화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학위명칭	프로그램 명칭	학위 명칭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공학심화	공학사(전기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국문) 공학사  (영문) Bachelor of Engineering
	화학공학부	화학공학트랙	화학공학심화	공학사(화학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	
	건축환경공학부	환경공학트랙	환경공학심화	공학사(환경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	
		건축공학트랙	건축공학심화	공학사(건축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트랙	기계공학심화	공학사(기계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	
		자동차공학트랙	자동차공학심화	공학사(자동차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공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디스플레이공학트랙	디스플레이공학심화	공학사(디스플레이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Display Engineering	디스플레이공학	
		전자공학트랙	전자공학심화	공학사(전자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정보보호공학트랙	정보보호학심화	공학사(정보보호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정보보호학	

<별첨 2- 공학교육인증제 심화프로그램 졸업증명서 서식(국문)>

제 ===== 호

## 졸업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졸업년월일 :       년   월   일  
학위명 : 공학사(○○○○심화)  
졸업증서번호 :  
학위등록번호 :  
대학, 학부(과) :  
제 1 전 공 :   ○○○○심화

부 전 공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호서대학교 총장

제 ===== 호

## 졸업증명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졸업 년 월 일 :        년    월    일  
학 위 명 : 공학사  
졸업증서 번호 :  
학위 등록 번호 :  
대학, 학부(과) :  
제 1 전 공 : ○○○○학과

부 전 공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호서대학교 총장

## HOSEO UNIVERSITY

165 Sechul-Ri, Baebang-myun Asan, Chungnam, 336-795, KOREA  
Tel(041)540-5114 Fax(041)548-1831

### CERTIFICATE OF GRADUATION

No. =====

Date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Date of Admission** :  
**Date of Graduation** :  
**Division(Department)** :  
**Degree Conferred** : Bachelor of Science in ○○○○ Engineering  
**First Major** : ○○ Engineering

**Mino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_\_\_\_\_

**Ilku Kang, Ph. D.**  
**President of Hoseo University**

## HOSEO UNIVERSITY

165 Sechul-Ri, Baebang-myun Asan, Chungnam, 336-795, KOREA  
Tel(041)540-5114 Fax(041)548-1831

### CERTIFICATE OF GRADUATION

No. =====

Date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Date of Admission** :

**Date of Graduation** :

**Division(Department)** :

**Degree Conferred** : Bachelor of Engineering

**First Major** : Engineering

**Mino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_\_\_\_\_

**Ilku Kang, Ph. D.**  
**President of Hoseo University**

제 ===== 호

## 졸업예정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졸업예정년월일 :       년   월   일

대학, 학부 (과) :

제 1 전공 :   ○○○○심화

부   전   공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호서대학교 총장

제 ===== 호

## 졸업예정증명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졸업예정년월일 :       년   월   일

대학, 학부 (과) :

제 1 전 공 :   ○○○○학과

부 전 공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호서대학교 총장



## HOSEO UNIVERSITY

165 Sechul-Ri, Baebang-myun Asan, Chungnam, 336-795, KOREA  
Tel(041)540-5114 Fax(041)548-1831

###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

No. =====

Date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Date of Admission** :  
**Expected Date of Graduation** :  
**Division(Department)** :  
**First Major** : ○○ Engineering

**Mino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_\_\_\_\_

**Ilku Kang, Ph. D.**  
**President of Hoseo University**

## HOSEO UNIVERSITY

165 Sechul-Ri, Baebang-myun Asan, Chungnam, 336-795, KOREA  
Tel(041)540-5114 Fax(041)548-1831

###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

No. =====

Date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Date of Admission** :  
**Expected Date of Graduation** :  
**Division(Department)** :  
**First Major** : **Engineering**

**Mino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_\_\_\_\_

**Ilku Kang, Ph. D.**  
**President of Hoseo University**